

주택계약유형별 신규신청 시기

주택 계약	신규	갱신	
		변경	연장
개념	임차인(A)이 해당 주택(B)에 처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는 경우	계약기한이 미도래하였으나 계약 변경사유가 생긴 경우 (B→B') ① 임대인 변경 ② 임차보증금 증감	계약기간이 도래하여 해당 주택(B)에서 기존계약 조건을 유지하거나 일부를 조정하여 기존계약을 연장하는 경우
서울시 추천 신청	임차계약서 상 잔금일 3개월 전부터	임대차계약서상 변경계약 시작일 3개월 전부터	임대차계약서상 기존계약 종료일 2개월 전부터
은행 대출 신청	잔금일 최소 1개월 전 신청 ※ 은행 지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	변경계약 시작일 최소 1개월 전 ~ 변경계약 시작일 전까지	~ 기존계약 종료일 최소 1개월 전까지
	※ 보증금 선지급, 대환 등은 예외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가능	※ 보증금 선지급, 대환 등은 예외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상 변경계약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 가능 ※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함	